■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7호서식] <개정 2018. 8. 21.>

자연휴양림 [ ] 조성계획 / [ ] 조성계획변경 승인신청서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하고,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 90일

신청인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
	주소(기관명)	전화번호

산림 소재지		구역면적	ha
자연휴양림의 명칭			

「산림문화 · 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휴양림 [ ]조성계획 [ ]조성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휴양림조성계획서(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가. 시설물(도로를 포함합니다)의 종류 · 규모 등이 표시된 시설계획 나. 시설물종합배치도(축척 6천분의1 이상 1천200분의1 이하 임야도) 다.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 라.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방법 마. 산림경영계획 2.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승인받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 음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신청인	경유기관 시·군·구	처리기관 시·도
신청서 작성 ➡	접수 및 현지조사 ➡	접수
		⬇ 검토·확인
		⬇ 승인
		⬇
통보 ⬅	⬅	승인서 작성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